

2026년 사천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2026년도 사천시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1.

사 천 시 장

1. 지원규모: 449억 원(하반기)

구 분	연간	상반기	하반기
계	500억 원	51억 원	449억 원

※ 자금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

2. 지원대상

-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공장등록하여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*
- *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~34에 해당

3. 지원 제외대상

- 신청일 현재 자금상환(시 자금)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
 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 - 구비서류를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재한 업체
 -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·폐업 중인 업체
 - ※ 단, 창업 1년 미만 이내 업체가 신청할 경우 공고일 현재까지 매출 증빙에 따라 용자 한도 조정
 - 매출액 3억 원 이상: 1억 원 / 8억 원 이상: 2억 원(최대)
 - 시 자금 상환 후 6개월 이내 재신청 업체
 - 정부, 지자체 등 정책자금 용자지원 실적*이 최근 5년간 100억(누적)을 초과하는 기업
- *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(<http://sims.go.kr>)기준

4. 지원 업체 선정

- 신청업체의 적격여부 검토 및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후 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 통지함

5. 지원범위(자금의 용도) *대환용도 사용 금지

- 경영안정자금
 - 원·부자재 구입비, 노임 지불 대금, 기술개발·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
- 시설현대화자금
 - 생산시설의 자동화,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, 경영관리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

6. 지원조건

○ 용자한도액: 업체당 최대 5억 원

상시종업원수	8인 이하	9인~15인	16인~30인	31인 이상
매 출 액	—	3억 원 이상	8억 원 이상	15억 원 이상
용자한도액 (백만 원)	100	200	350	500

※ 상시 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업체에 유리한 것 적용

※ 신청업체가 많은 경우 용자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

○ 용자 기간

— 경영안정자금: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

— 시설현대화자금: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

○ 대출금리: 이차 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

○ 지원내용: 용자금에 대한 이차차액보전금 지원

○ 이차보전율(사천시 지원)

— 경영안정자금 2.5% / 시설현대화자금 3.5%

(단, 대출금리가 보전율보다 낮을 경우는 해당 기업체의 적용금리를 보전)

○ 대출기한: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— 시설현대화자금에 한하여 1회(3개월) 연장 가능

— 대출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실효된 것으로 간주

○ 금리 우대 업무협약 안내 (사천시-IBK기업은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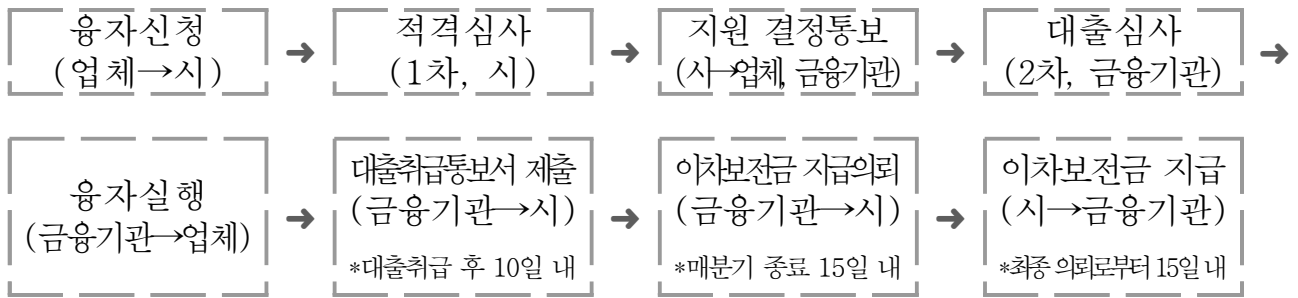
— IBK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시 대출금리 최대 1% 추가감면

— 창업 7년 이내 지원대상 업체가 IBK기업은행을 통해 시설현대화 자금 대출 시 대출금리 최대 1.5% 추가감면(중복되지 않음)

— 용자 가능 여부 등 IBK기업은행에 우선 상담 후 신청

— 문의처: IBK기업은행 협약지점(진주지점, 진주상평지점)

7. 용자 절차



8. 용자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6. 7. 1. (수) ~ 자금 소진 시까지
- 접수처: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(3층)
- 접수방법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
 - 우편접수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(52539)
 - 제출 시 업체 담당자 연락처 기재
- 문의처: 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기업지원팀 (☎831-3475)
- 구비서류(원본서류 제출)

구 분	구 비 서 류
공통서류	① 용자신청서(근로자명단 포함) ② 사업계획서(해당서류 제출, 자금 사용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) - 경영안정자금: 사업계획서 - 시설현대화자금: 보유시설 현황, 시설자동화 계획, 신청시설 및 조정내역, 매매·설비계약서 사본,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③ 법인의 경우: 법인등기부등본(30일 이내 발급) 개인의 경우: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확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⑤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(세무서 발급) ⑥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) ⑦ 토지·건물 등기부등본(임대공장은 임대차계약서)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기타서류 (해당시 제출)	① 기타 가점 부여대상 입증서류, 인증서 사본 등 (경영 및 품질인증,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획득업체) ② 최근연도 수출실적 증명

※ 사본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

9. 융자 기관: 우리시와 협약을 체결한 경상남도 내 취급금융기관

- BNK경남은행(도내 본점 및 지점), NH농협은행(사천시지부, 삼천포지점), IBK기업은행(진주지점, 진주상평지점), 우리은행(사천지점), KEB하나은행(진주지점, 진주중앙지점), 신한은행(도내 본점 및 지점), KB국민은행(삼천포지점, 진주종합금융센터), KDB산업은행(진주지점), 삼천포농업협동조합, 정동농협협동조합, 서포농업협동조합,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, 사천축산업협동조합, 삼천포새마을금고, 사천새마을금고, 노산새마을금고

10. 기타 유의사항

- 시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이므로 담보제공 등 별도의 은행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(대출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)
- 자금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융자 지원 중 휴업, 폐업, 관외 이전, 매매 시 지원 제외대상이 되므로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된 금액은 기간별 정산 후 환수조치함
- 업체명·대표자소재지 변경, 법인전환,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시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 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 - － 변경신고: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
 - － 변경승인신청: 개인기업의 법인전환, 주 생산업종·지원시설·대표자변경 (※ 기업의 인수·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)
-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자금사용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- 시설현대화자금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설투자사업 완료 통보서를 사업 전·중·후(위치동일) 사진 1부, 세금계산서 사본 1부, 계약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